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. 9. 22 선고 2022가단1104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

변 론 종 결 2022. 8. 18.

판 결 선 고 2022. 9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7. 24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11. 9. 접수 제301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채권자이다. 피고는 D, 망 E(2021. 7. 24. 사망) 사이 자녀(장남)이다. D, 망 E는 1975. 혼인하고, 2011. 협의이혼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6. 4. 22. D에 대하여 63,475,019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(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610839).

다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은 원래 망 E의 소유였다. 그가 2021. 7. 24. 사망한 후, 피고와 F, G, H 등 상속인들(자녀들)이 협의를 통해 피고가 단독상속받기로 하고, 2021. 11. 9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30179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28호증, 을 제1, 2호증(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 요지

D과 망 E는 2011. 협의이혼을 하였으나, 실제로는 가장이혼이다[원고의 채무자 D에 대한 유체동산 집행절차(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J)에서 D이 망 E와 함께 거주하고, 나아가 망 E가 배우자로서 우선매수한 사정 등으로 보아 알 수 있다]. 망 E의 상속인(배우자)인 D과 피고 등 상속인들(자녀들)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상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에 관한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이다. 따라서 위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3. 판단

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,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(대법원 2017. 9. 12. 선고

2016두58901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,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서울남부지방법원

2015가소610839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 D에 대하여 신청하여 개시된 이 법원 J 유체동산

경매절차에서 2018. 11. 8. 망 E가 배우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

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, 한편 앞서 본 인정 사실들 및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, 즉

D과 망 E가 2011. 이미 이혼한 점, 망 E가 2015.경 위암이 발병하여 그에 대한 병간호가

필요한데다가 장남인 피고가 고령의 부모를 함께 모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었다는 취지의 피고 측

주장은 일응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, 이혼한 부부들이 혼인의 의사 없이 다양한 현실적인 동기나

가족들의 권유로 같은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, 이혼 후 혼인의 의사를 갖고 동거하는 등

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 공유관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

있는바,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망 E가 배우자로서 우선매수청구권을

행사하였다 하여 당초부터 가장이혼으로서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할

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과 망 E의 2011.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

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.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국식